

제 2 장 공급사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DN Solutions (이하 "당사"라 한다)의 공급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급사"라 함은 제품 생산용 자재로 당사의 제작사양(도면, 시방서) 또는 승인도에 의하여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2. "Pool업체"라 함은 당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신규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3. "잠재업체"라 함은 Pool업체 중 잠재업체 등록기준(Auto Screen)을 만족하며 신규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4. "공급사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공급사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공급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공급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공급사 선정기준)

당사는 잠재업체 중에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통해 공급사를 선정한다.

1. 잠재업체

1) 필수조건

- 품질인증(ISO9000/QS9000/TS16949) 획득업체
- 종업원수 7명 이상
- Auto Screen 평가항목의 평가결과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 획득.

2) 평가항목 및 배점

- 품질(400점), 납기(50점), 기술(100점), 환경(100점), 경영(350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OSHAS 18001) 인증업체는 20점 가산
단, 총점이 만점(1,000점)을 넘지 못함.

2. 공급사

1) 필수기준

- 잠재업체로 등록
- 신용인증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용등급 B이상 취득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1,000점 만점 중 750점 이상 획득

2) 평가항목 및 점수

- 경영관리(300점), 원가관리(100점), 품질관리(500점), 환경관리(100점)
- 경영관리 부문에서 Global 능력도 20점 가산

·고객만족도 관리에서 20점 가산
단, 총점이 만점(1,000점)을 넘지 못함

제4조(공급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 공개)

1. 공급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공급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e-공급망 관리→공급사 관리정책→공급사 선정기준 및 절차

2) 공급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45일 전에 그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3) 공급사 선정(미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급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2. 공급사 선정 절차

1) Pool업체

- 거래희망업체는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e-공급망 관리) 온라인 업체 등록에서 업체정보를 등록

http://partner.dn-solutions.com/vd_esourcing/spMTVendorSelKitPop.do

2) 잠재업체

- 당사 홈페이지의 시스템에서 자동평가(Auto Screen) 수행

- 점수가 미달된 업체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평가를 통해 잠재업체가 될 수 있음

3) 등록업체

- 잠재업체 중에서 당사 구매부서의 요청으로 대상 선정

- 신용인증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 이상 획득

- 당사의 실사평가 결과 기준에 만족하면 공급사로 등록

-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른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제5조(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공급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견적 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제6조(공급사 등록취소 기준)

공급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취소 기준

- 당사와의 구매계약 조항 및 당사자가 정한 특별관리약정을 위배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이 있을 때

- 어음, 수표 등이 지급정지 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

- 화재 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2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 될 경우
- 발주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업체가 부품을 반납한 경우
- 당사 생산 기종이 중단되는 경우
- 당사의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평가 결과 지속 거래 기준에 부합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2. 등록 취소 절차

- 공급사에 사전최고 거래 해지 공문을 발송
- .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 기준 명기
- . 회신된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거래 해지 또는 지속 거래
- .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는 거래 해지.

3. 공급사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

당사는 공급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상벌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0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06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